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8. 11 선고 2020나3772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3.

판 결 선 고 2021. 8. 11.

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11. 13. 선고 2019가소9317 판결

## 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 3,177,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1. 2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원고는,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이던 피고가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100,000원씩 공제하여 원고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가 2015. 11. 25. 그 적금을 해지하여 원리금 3,177,064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3,177,064원과 이에 대한 2015. 11. 26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갑 제1,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원고 명의의 적금 계좌에 2012. 11월경부터 2015. 6월경까지 31회에 걸쳐 100,000원씩 합계 3,100,000원을 입금한 사실, 위 적금이 2015. 11. 25. 해지되어 피고가 세금을 공제한 3,177,064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갑 제1~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100,000원씩을 공제하여 위 적금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(오히려 을 제4, 5호증, 제6호증의1, 2, 제8,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100,000원씩을 피고의 출재로 적립한 것으로 보인다), 위 적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이창열, 판사 정우혁, 판사 정현서